

다원재가복지센터 기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성사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이상	16,630	150분이상	48,250
60분이상	24,120	180분이상	54,320
90분이상	32,510	210분이상	60,530
120분이상	41,380	240분이상	66,770

2.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용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	15%	9%	6%	

▶재가급여(2024.01.01.기준)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40%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구급권자
1등급	2,069,900 원	310,485 원	186,291 원	124,194 원
2등급	1,869,600 원	280,440 원	168,264 원	112,176 원
3등급	1,455,800 원	218,370 원	131,022 원	87,348 원
4등급	1,341,800 원	201,270 원	120,762 원	80,508 원
5등급	1,151,600 원	172,740 원	103,644 원	69,090 원

[신원인수인 권리 및 의무]

대상지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해외이주, 이사,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
-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